6. 정보산업 관련법규

정보화촉진기본법〔1995·8·4 法律第3984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産業 基盤을 造成하며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를 實現함으로써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文字·音聲·音樂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라 함은 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 각 분야의 活動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 및 그 活用과 이에 관련되는 機器·技術·役務 기타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活動과 手段을 말한다.
4. "情報保護"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중에 情報의 훼손·變造·流出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技術的 手段(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이라 함은 實時間으로 動映像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의 高速·大容量의 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이라 한다)과 이에 接續되어 이용되는 각종 情報通信機器·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第3條(情報通信施策의 기본원칙) 政府는 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및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이하 "情報化促進"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民間投資의 擴大와 公正競爭 촉진
2.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制度의 수립·施行
3. 情報通信基盤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活用
4. 地域的·經濟的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 提供
5. 개인의 私生活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각종 情報資料의 安全性유지
6. 國際協力의 촉진

第4條(年次報告등) ①政府는 매년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動向과 時策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社會 각 분야의 情報化에 대한 指標를 調査開發 및 普及하여야 한다.

第2章 情報化의 촉진

第5條(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여 수립하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情報化促進등에 대한 施策의 基本方向
2. 公共·地域·産業·生活등 각 분야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3. 情報通信利用者(이하 "利用者"라 한다)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個人情報에 관한 사항
6.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7. 情報通信技術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8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에 관한 사항
9.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에 관한 사항
10 情報化促進등과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1.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에 관한 사항
12.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6條(施行計劃의 수립)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前年度의 施行計劃 推進實績과 다음 年度의 施行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審議를 받아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된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등의 調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수행하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機關의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情報通信部長官과 協議를 거친 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이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第8條(情報化推進委員會) ①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情報化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은 委員長·副委員長을 포함하여 25人이내로 한다.

③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院長官이 되며, 委員은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關係行政機關의 長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다만, 國會事務總長과 法院行政處長은 第9條에서 정한 委員會의 審議事項이 당해 機關의 業務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委員會에 출석한다

④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國務總理 行政調整室長이 된다.

⑤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를 두며, 情報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⑥委員會,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각 委員會의

長이 위촉하는 者로 情報化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⑦委員會의 운영과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構成·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基本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 및 施行計劃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調整에 관한 사항
4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의 運用方針에 관한 사항
6 電算網普及擴張과 移用促進에 관한 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基幹電算網의 開發促進등에 관한 사항
7 情報化促進時策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8 기타 情報化促進등과 관련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10條(專門技術支援機關) ①政府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算院을 國家·地方自治團體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情報化促進등을 지원하기 위한 專門技術支援機關(이하 "專門機關"이라 한다)으로 活用할 수 있다.

②專門機關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專門技術의 지원
2. 公共機關의 情報通信網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公共機關 主要情報의 원활한 流通과 共同活用을 위한 시스템의 構築·운영의 지원
4. 公共機關의 情報化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③ 專門機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公共情報化등의 추진) ①公共機關의 長은 行政業務의 情報化와 醫療·敎育·文化 및 環境의 情報化등 公共分野의 情報化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社會의 特性에 적합한 地域情報化事業을 추진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에 상응하는 行政·財政·技術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政府는 産業基盤의 高度化와 産業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企業의 情報化 및 企業간 情報通信網의 構築·이용등 産業情報化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第12條(情報文化의 擴散) ①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弘報와 敎育의 擴大등 情報文化 擴散을 위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廣範圍하게 擴散될 수 있도록 新聞, 放送등 言論媒體를 활용한 情報通信關聯敎育과 弘報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3條(情報의 提共擴大등) ①政府는 公共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情報의 제공을 擴大하고 그 流通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 및 그 活用과 이에 관련되는 諸般權利의 保護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情報의 獨占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接近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4條(情報保護등) ①政府는 건전한 情報通信秩序의 확립과 情報의 安全한 流通을 위하여 情報保護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保護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情報保護센터를 設立·운영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保護센터의 設立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情報保護시스템에 관한 基準告示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保護시스템의 性能과 信賴度에 관한 기준을 告示하고, 情報保護시스템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流通중인 情報保護시스템이 第1項의 規定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情報保護시스템의 補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保護시스템의 補完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利用者의 權益保護등) ①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함에 있어 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弘報·敎育 및 硏究
2. 利用者의 건전한 組職活動의 지원 및 육성
3. 利用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防止
4. 利用者의 不滿 및 被害에 대한 신속·공정한 救濟措置
5. 기타 利用者保護와 관련된 사항

②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超高速網事業者와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에 있어서 利用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3章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第17條(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8條(技術開發의 추진) ①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技術의 評價 및 活用에 관한 사항
2. 技術協力·技術指導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사항
4. 産學協同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情報通信産業 技術開發과 관련된 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第19條(情報通信 標準化의 추진) 政府는 情報通信의 효율적 운영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關係法律의 規定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情報通信關聯 標準의 制定 및 普及
2. 情報通信標準에의 適合認證
3. 기타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20條(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各級學校 기타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情報通信

教育의 지원

2 一般國民에 대한 情報通信教育의 擴大

3 情報通信技術人力養成事業의 지원

4 情報通信專門技術人力養成機關의 설립·지원

5. 情報通信 教育프로그램의 개발 및 普及 지원

6 情報通信技術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技術人力需給 지원

7. 기타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21條(情報通信團地의 造成)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産業立地의 造成 및 供給과 情報通信産業基盤施設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民間人이 공동으로 團地를 造成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第22條(新技術에 대한 지원등) 政府는 情報通信과 관련된 優秀한 新技術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優秀新技術로 지정하여 創業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3條(流通構造의 개선) 政府는 소프트웨어등 情報通信關聯製品의 流通構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流通施設擴充, 流通業體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第24條(情報化促進등의 國際協力 촉진)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關聯技術·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研究開發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第25條(情報通信關聯機關의 지원등)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情報通信關聯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 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情報通信관련 調査·統計

2. 情報通信관련 技術의 開發

3 情報通信관련 專門人力의 養成

4. 情報通信관련 정책의 調査研究

5. 情報通信관련 標準의 研究·開發 및 普及

6 情報通信관련 對外協力

7. 기타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4章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第26條(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促進 및 移用活性化)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을 조기에 構築하고, 公共 및 民間分野에서의 이용을 活性化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7條(專擔機關의 지정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원활한 構築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弘報, 國際協力, 技術開發등 그 業務를 專擔할 機關(이하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에서 專擔機關에 出捐하거나 融資등을 할 수 있다.

③專擔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超高速國家網의 관리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財政으로 公共機關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機關(이하 "非營利機關"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超高速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國家網"이라 한

다)을 構築·관리하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構築·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非營利機關등이 超高速國家網을 최소의 費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超高速國家網의 構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超高速情報通信網 사업의 승인등) ①다음 各號에 1에 해당하는 地域안에서 電氣通信基本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 超高速情報通信網을 構築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2.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自由地域
3 航空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區域
4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新空港
5. 港灣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區域
6. 기타 情報通信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地域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者는 電氣通信事業法 第6條(第6號를 제외한다)와 綜合有線放送法 第5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綜合有線放送法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超高速網事業者"라 한다)는 그 地域안에서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및 綜合有線放送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0條(自家電氣通信設備등의 제공) ①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 및 綜合有線放送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傳送網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設備 및 施設을 超高速事業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傳送線路施設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第31條(相互接續등) ①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는 超高速網事業者가 情報通信設備의 相互接續에 관한 協定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月이내에 그 協定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에 관한 協定은 電氣通信事業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協定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 第35條 및 同法 第78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超高速情報通信網擴充을 위한 협조등) ①政府는 超高速情報通信網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管路·共同溝·電柱등(이하 "管路등"이라 한다)의 施設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및 超高速網事業者(이하 이 條에서 "事業者등"이라 한다)는 道路·鐵道·地下鐵道등을 建設·運用·관리하는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負擔을 조건으로 戰記通信線路設備의 設置를 위한 管

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를 요청할 수 있다.

③事業者등은 第2項의 機關과 管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 建設交通部長官과 사전에 協議하여야 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 또는 貸與의 요청 및 合意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情報化 促進基金

第33條(情報化促進基金의 設置)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化 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4條(基金의 財源과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3. 韓國電氣通信公社法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

5 借入金 기타 收入金

②基金은 基本計劃에 따라 施行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運用한다.

1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事業
2. 公共·地域·産業·生活 등의 각 분야 情報化促進事業
3. 情報通信에 관한 研究開發事業
4. 情報通信關聯 標準의 開發·制定 및 普及事業

5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事業

6 第1虎 내지 第5號에 規定된 사업의 附帶事業

7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第35條(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情報通信研究開發業務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 研究開發에 충당하기 위하여 基金에 별도의 計定을 設置·運用할 수 있다

④기타 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 則

第36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의 소속 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廢止하는 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振興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이 이를 承

繼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2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情報化促進基本法

②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電算網調整委員會의 調整을"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로 한다.

第5條 내지 第7條를 削除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情報通信硏究·開發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1987·12 4 法律第3984號〕

改正 1995 12 6 法律第4997號 전문개정

第1條(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 進興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設計書·記述書 기타 關聯資料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經濟·社會 및 公共部門의 효율성 提高와 生産性 향상등 特定目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各種情報 및 關聯要素들이 有機的으로 結合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流通 및 유지보수등의 活動과 情報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企劃·開發 및 유지보수등 一聯의 情報處理活動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施策의 基本方向) ①소프트웨어의 開發은 경쟁과 원리에 따라 그 開發者가 自律的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政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與件의 造成과 環境의 開發에 注力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소프트웨어 産業의 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開發 및 流通을 촉진하는 環境의 造成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開發關聯 專門人力의 養成 支援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新規需要創出 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産業의 進興基盤造成

第4條(소프트웨어進興協議會) ①第3條第2項의 施策을 協議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長官所屬하에 소프트웨어振興協議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소프트웨어開發事業) ①政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關聯技術의 開發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國·公立 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硏究機關
3. 企業의 附設硏究所 및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4. 敎育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5. 소프트웨어 事業者
6.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프트웨어開發事業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6條(소프트웨어 情報의 관리)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技術水準·硏究動向·市場動向 및 事業者現況등 國內外 소프트웨어 産業全般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여 이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관리하고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傳門的으로 관리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傳門的으로 관리하는 機關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 事業者로 하여금 申告하게 할 수 있다.

第8條(品質保證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流通促進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品質保證基準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基準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다.

第9條(소프트웨어技術性評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購買 또는 用役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技術性評價基準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性評價基準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다

第10條(소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 또는 公共機關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用役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原價計算業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 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品質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第11條(소프트웨어 振興環境造成) ①소프트웨어事業者가 소프트웨어 關聯機關·設備 및 情報등을 一定地域안에 集中化시켜 소프트웨어 開發을 촉진하고 공동으로 소프트웨어産業을 振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政府는 해당 지역을 소프트웨어振興區域으로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의 지

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소프트웨어振興事業推進) ①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開發 또는 技術向上에 필요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債務를 보증하는 사업
2. 經濟·社會 및 公共部門에서 효율성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開發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貸付 또는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開發者에 대한 共濟事業
4. 開發된 소프트웨어의 權利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普及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13條(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 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은 소프트웨어 事業者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者로 한다.

④協會의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事業者에 대한 現況 및 關聯統計의 調査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3. 소프트웨어技術情報의 蒐集, 分析 및 제공
4. 소프트웨어事業者를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海外協力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流通促進 및 使用者 지원에 관한 사항
8. 第1號 내지 第7號의 附帶事業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財政上의 措置등) 政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開發 및 利用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行政上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고 技術振興, 人力養成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團體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소프트웨어 産業協會(이하 "法人"이라한다)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

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된다.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1986·12·31 法律第3920號〕

改正 1989 12.30 法律第4183號(政府組織法)
1995 12 6 法律第4996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著作者의 權利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著作者"라 함은 프로그램을 創作한 者를 말한다.
3. "複製"라 함은 프로그램을 有形物에 固定시켜 새로운 創作性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製作하는 것을 말한다.
4. "改作"이라 함은 原프로그램의 一聯의 指示·命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創作하는 것을 말한다.
5. "2次的 프로그램"이라 함은 原프로그램을 改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6. "公表"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特定人 또는 不特定 多數人(이하 "公衆"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公衆의 需要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複製하여 公衆에게 配布하는 것을 말한다.
8. "配布"라 함은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公衆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外國人의 프로그램) ①外國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이 創作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大韓民國내에서 발행된 外國人의 프로그램(外國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外國人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條約 및 이 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4條(適用除外) ①이 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言語·規約 및 解法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言語"라 함은 프로그램을 表現하는 手段으로서의 文字·記號 및 그 體系를 말한다.
2. "規約"이라 함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言語의 用法에 관한 특별한 約束을 말한다.
3 "解法"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指示·命令의 組合方法을 말한다.

第5條(2次的 프로그램) 2次的 프로그램은 獨自的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第6條(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①原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프로그램著作者로서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者는 프로그램著作者로 推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者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公表者 또는 發行者가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

第7條(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國家·法人·團體 그밖의 使用者(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 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상 創作한 프로그램은 契約이나 勤務規則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한 그 法人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著作者로 한다 〈改正 94·1·5〉

第8條(프로그램著作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와 프로그램을 複製·改作·번역·配布 및 발행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 著作權은 프로그램이 創作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은 그 프로그램이 公表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후 50年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改正 95·12·6〉

第9條(公表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그 프로그램을 公表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을 한 경우에는 特約이 없는한 프로그램 著作者가 그 相對方에게 프로그램의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본다.

③原프로그램著作者의 同意를 얻어 創作된 2次的 프로그램이 公表된 경우에는 改作에 採用된 原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公表된 것으로 본다.

第10條(姓名表示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그의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者는 그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한 프로그램著作者가 그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1條(同一性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내용 및 形式의 同一性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變更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效果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變更
3 프로그램의 性質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變更

第12條(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複製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

正 95・12・6〉

1 裁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敎育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서 敎育을 담당하는 者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用途, 複製의 部數 및 特性에 비추어 프로그램著作權者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授業課程에 제공할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이하의 敎育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敎科用 圖書에 게제하는 경우

4 家庭과 같은 限定된 場所에서의 개인적인 目的(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學校의 入學試驗 그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목적(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第13條(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등) ①프로그램의 複製物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所持・사용하는 者는 그 複製物의 滅失・毁損 또는 變質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複製物을 複製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하는 者는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를 喪失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製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가 당해 複製物이 滅失됨으로 인하여 喪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著作權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할 수 있다.

第15條(共同著作프로그램) ①2人이상이 共同으로 創作하고, 各自가 이바지한 부분을 分離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共同著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著作權은 共同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 하며, 그들의 共有持分은 共同著作者間에 特約이 없는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共同著作프로그램의 著作權은 共同著作權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共同著作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共同著作權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 成立을 방해하거나 同意를 거부할 수 없다

③共同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거나 그 持分을 포기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同著作權者에게 각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된다.

第16條(프로그램의 使用許諾)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받은 자는 許諾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는 사용할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16條의2(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①프로그램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프로그램을 營利를 目的으로 貸與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4・1・5〕

第17條(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著作權者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使用許諾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고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 補償金을 프로그램著作權者를 위하여 供託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複製物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承認年月日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第18條(프로그램의 流通促進) 프로그램著作者는 이미 발행하여 流通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善意의 최종프로그램使用者로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9條(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의 행사 등) ①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은 質權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한 프로그램 著作權者가 이를 행사한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의 讓渡 또는 貸與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者가 받을 金錢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金錢의 支給 또는 물건의 引渡전에 支給될 金錢이나 물건을 押留하여야 한다.

第20條(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프로그램著作權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1. 프로그램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著作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第3章 登 錄

第21條(프로그램의 登錄) ①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사항을 登錄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創作後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名稱 또는 題號
2. 프로그램著作者의 國籍·實名 및 所在
3. 프로그램의 創作年月日
4. 프로그램의 槪要

②프로그램著作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 한 그의 遺言으로 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登錄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改正 95·12·6〉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公報를 발행하여 그 登錄事實을 公示하여야 한다.〈改正 95·12·6〉

⑤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公報, 프로그램登錄簿의 열람 및 寫本交付請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6〉

⑥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登錄簿의 열람 및 寫本交付를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新設 95·12·6〉

第22條(프로그램 제출) ①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는 登錄時에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12·6〉

②第1項의 規程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登錄된 프로그램은 그 登錄된 創作年月日에 당해 프로그램

이 創作된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秘密維持義務)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管理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프로그램著作權의 登錄) 다음 各號의 사항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制限
2. 프로그램著作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制限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25條(침해의 정지등 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그의 權利를 침해하는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道具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第26條(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改正 95·12·6〉

1. 輸入시에 國內에서 만들어졌더라면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複製物(第1號의 輸入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이를 컴퓨터에 業務상 사용하는 행위
3. 프로그램著作權者의 許諾없이 그 프로그램을 通信網을 통하여 電送하거나 配布하는 행위〔全文改正 94·1·5〕

第27條(損害賠償請求) ①프로그램作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한 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利益額은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④프로그램著作權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외에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共同著作프로그램의 權利侵害) 共同著作프로그램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權者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 著作權者의 同意없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5章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第29條(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①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에 관한 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

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15人 이하의 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프로그램 및 著作權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하며, 委員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委員중에서 지명한다 〈改正 95·12·6〉

④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職位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委員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存在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全文改正 94·1·5〕

第29條의 2(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프로그램著作權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 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審議한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3 (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중 1인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者로 한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4 (調停의 申請등) ①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기재한 調停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은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調停部가 행한다.

③委員會는 調停申請이 있는 날부터 3月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29條의 5(출석의 요구)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그 代理人 또는 利害關係人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調停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 6(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當事者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7 (調停費用) ①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때에는 特約이 없는한 當事者 各自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8 (委員會의 組織) 委員會의 組職과 운영, 調停節次,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5〕

第29條의9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5〕

第6章 補 則

第30條(關係部處와의 協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 著作權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定·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5・12・6〉

第3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著作權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定을 適用한다.

第32條(權限의 委託)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22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錄・제출 및 著作權 登錄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6〕

第33條(育成施策) 政府는 프로그램보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品質保證・技術向上 및 開發促進등을 위하여 공정한 去來精神에 입각하여 需要創出등 필요한 育成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3條의2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關聯產業의 육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을 信託管理하는 專門機關(이하 "委託管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를 業으로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管理機關의 운영 및 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6〕

第7章 罰 則

第34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1. 프로그램著作權을 公表・複製・改作・번역・配布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者.
2. 第2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②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天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6〕

1. 정당한 權原없이 프로그램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題號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者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錄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複製物의 제출을 허위로 한 者
3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業務를 한 者

④第3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를 業으로 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95・12・6〕

第3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6條(告訴) 第34條第1項 및 第3項第1號의 罪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改正 94・1・5〕

第3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情報通信部長官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第34條第2項,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94·1·5, 95·12·6〕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1987年 7月 1日전에 創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大韓民國이 加入한 世界貿易機構 貿易關聯知的所有權에 관한 協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을 적용한다〔改正 95·12·6〕

附 則 〈89. 12. 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 則 〈93. 3. 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 則〈94·1·5〉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5·12·6〉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